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9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0년 2월 25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대학생 등록금 납부액에 대한 현 실정을 감안하여 대학생에 대한 지급금액의 범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금액을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퍼센트 이내로 함(안 제19조제1항제3호).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9조제1항제3호 중 “120퍼센트”를 “150퍼센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9조(장학금 지원) ① 시장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지급대상자격: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<u>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</u></p> <p>2. 지급인원: 자녀 1명</p> <p>3. 지급금액: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별표 6에 따른 <u>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9조(장학금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지급대상자격: 「<u>초·중등교육법</u>」에 따른 <u>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지급금액: <u>고등학생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9조(장학금 지원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150퍼센트----- -----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(이하 ”총리령“이라 한다)”을 “(이하 ”법 시행규칙“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총리령”을 “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총리령”을 “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총리령” 부분을 “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총리령”을 “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총리령”을 “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총리령”을 “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총리령”을 “법 시행규칙”으로 하고, 제2호 중 “장애등급이”를 “장애의 정도가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지급대상자격: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
3. 지급금액: 고등학생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6에 따

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장이 발급하고, 재발급의 경우도 같다.</p>	<p>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<u>총리령</u>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	<p>제11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<u>법시행규칙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심의대상) <u>총리령</u> 제12조제2항제4호의 "그 밖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"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12조(심의대상) <u>법시행규칙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소집수당)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 및 <u>총리령</u> 제19조에 의한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출동(활동)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6조(소집수당) ① ----- -----<u>법시행규칙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재해보상) ① 법 제17조 및 <u>총리령</u> 제21조에 따른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용소방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</p> <p>1. 요양보상: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</p> <p>2. 장애보상: 의용소방대원의 <u>장애등급</u>이 확정된 날</p>	<p>제18조(재해보상) ① -----<u>법시행규칙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2. -----<u>장애의 정도</u>가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3.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: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3.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9조(장학금 지원) ① 시장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<u>1. 지급대상자격: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</u></p> <p>2. 지급인원: 자녀 1명</p> <p><u>3. 지급금액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9조(장학금 지원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지급대상자격: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지급금액: 고등학생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